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86
----------	------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원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
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문화재단
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문화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시 상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개정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 또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결산완료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 위원회 노승재 의원(송파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조례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기 법령의 개정일은 2019년 12월 3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종합적인 운영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내용이 반영되기까지 1년여가 소요¹⁾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상기 조례가 개정될 당시 각각의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면 입법경제성도 확보했을 것이므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공기업담당관을 포함한 집행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음.

1)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어 개정 완료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8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소영,
김태호, 봉양순, 송명화,
안광석, 유 용, 이광성,
이중환, 황규복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문화재단도 이를 적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문화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
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3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업무계획 등)</p> <p>① (생략)</p> <p>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u>3월</u>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업무계획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2월</u> ----- -----.</p>